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일, 김상욱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11. 1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3회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 3. 5.)

-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3. 6.)

-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상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되었음. 그러나 현행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안 제2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개정안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삭제하여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제2조제4호 각 목1)의 어느 하나에 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

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되,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5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u>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 ----- <u>아동·청소년</u> ----- ----- ----- ----- -----.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

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현행	개정안
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 ----- ----- ----- ----- ----- -----.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u><신 설></u>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한 행위에 한정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조의2²⁾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 성적 착취 목적 불요)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나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 학대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루밍 행위³⁾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님. 예컨대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만남에서 성적 욕망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경우는 현행법 제15조의2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 성적 착취 목적 불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3) 그루밍(Grooming)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성인인 가해자가 아동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통하여 성적인 가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성인 가해자가 나이·경제적·지적인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를 악용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음(이수정 외,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148쪽; 전수아 외,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제1호, 2021, 98쪽; 김학경,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 법제와의 비교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4권제2호, 11쪽)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성범죄처벌법 제15A조4)에서는 아동과의 성적 대화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대화 수단에 제한이 없어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손글씨, 구두 등 오프라인 대화도 모두 포함하고 있고⁵⁾, 독일 형법 제176조제3항 및 제4항⁶⁾에서도 아동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친 자 등을 처벌하면서 그 수단을 정보통신망으로 한정하지 않고 저작물(서면), 음란도화나 음란표현물 게시, 음란한 내용의 녹음매체 재생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⁷⁾

또한, 개정안은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는 현행법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개념상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오프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 또는 그 외의 방

4) 영국 2003년 성범죄처벌법(Sexual Offences Act 2003), 원문: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9/section/67>

5) 김학경,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 법제와의 비교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4권제2호, 2024, 18~20쪽 참조.

6) 원문 및 번역본은 국회도서관 세계법제정보 “독일형법” 참조(https://world.moleg.go.kr/web/wli/lgsIInfoReadPage.do?CTS_SEQ=42067&AST_SEQ=69&nationReadYn=Y&ETC=3&searchNtnl=DE)

7) 안경옥,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55권제4호, 2020, 43~51쪽 참조.

법을 통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49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오프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더 적절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이인선의원, 한지아의원(2202280, 2203538), 서범수의원, 김남희의원, 김상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